

2020.5.8.~5.12./ 5일간

# 제3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 심사결과

의안명	심사결과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원안가결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주요내용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20. 5. 1.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민선7기 3년차 시작에 즈음하여 행정조직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일하는 조직으로 재설계
  - 미래먹거리 발굴 및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구정비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복·유사·분산된 업무 재배치 및 분장사무 정비
- 주요내용
  - 담당관 조정 : 2담당관 → 2실
    - 명칭변경 : 기획감사담당관 → 기획실
    - 신설 : 소통정보실
  - 경제건설국 소속(課회) 조정 : 5과(동일)
    - 소속변경 : 미래디자인담당관 → 경제건설국 미래성장개발과
    - 통합 : 일자리경제과+교통정책과 →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 분장사무 조정
    - 홍보·미디어·공공디자인·정보통신 업무 → 소통정보실
    - 인구정책·청년 업무 → 행정복지국 총무과
    - 노란꽃축제·홍길동테마파크 업무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관광자원개발·공공시설·산단·기업유치 업무 → 경제건설국 미래성장개발과
    - 국가·지방정원 및 조경 업무 → 경제건설국 산림편백과
    - 체육시설관리·공설운동장 → 문화시설사업소
    - 도서관 → 평생교육센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0. 5. 1.
- 발 의 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행정기구 조정 및 분장사무 정비에 따라 행정 서비스 질 향상 및 군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원조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 618명 → 638명 (20명 증)
  - 직급별 정원 조정
    - 장성읍장 : 5급 → 4.5급

(단위 : 명)

구분	계	일 반 직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계	4급	4~5급	5급	6급이하				
당초	618	592	3	1	34	554	1	1	3	21
변경	638	612	3	2	33	574	1	1	3	21
증감	+20	+20	-	+1	△1	+20	-	-	-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5. 1.
- 제 안 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권고사항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대상 추가(안 제2조)
    - (현행)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중에

서 위촉한다.

- (개정)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신설(안 제3조)
  -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5. 1.**
- **제 안 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제출일자 : 2020. 5. 1.**
- **제 안 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 지역 내 농산물 판매 소비시장 협소로 인한 푸드플랜 참여농가 확대 한계로 대도시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로 지역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매입예정지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949-3번지 / 15.467㎡

○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추정가격	비고
계		1필지 / 동	15,467	9,000,000	
취득	토지매입	1필지	15,467	9,000,000	
	건물신축	-	-	-	
	기 타	-	-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출일자 : 2020. 5. 1.
- 제안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 북이면사무소는 1976년에 신축되어 약 4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장성군내 읍·면사무소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시설의 노후화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실정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대민서비스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근로의욕의 저하와 청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면사무소의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주요내용

- 위 치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587-29번지 일원

- 용 도 지 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사 업 기 간 : 2019년 12월 ~ 2020년 06월
- 사업 시행자 : 장성군청
- 주요변경사항: 군계획시설 신설 (공공청사 신설)
- **의결결과 : 찬성의견 채택**

## 7.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출일자 : 2020. 5. 1.**
- **제 안 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 의회는 1991년 출범하여 27년 동안 군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성군 청사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거점으로 지역민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로 불편함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군의회 청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군관리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80-10번지 일원
  - 용 도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 업 기 간 : 2019년 12월 ~ 2020년 06월
  - 사업 시행자 : 장성군청
  - 주요변경사항: 군계획시설 신설 (공공청사 신설)
  - **의결결과 : 찬성의견 채택**

## 8.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제출일자 : 2020. 5. 1.
- 제안자 : 장성군수(평생교육센터장)
-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평생교육법」 주요 위임사항

- (제14조)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1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 주민 개인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제3조)
    - 제정 목적, 평생교육의 의의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원칙
  -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안 제5조~제11조)
    -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성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의 설치(안 제12조~제13조)
    - 평생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성군 평생학습관 지정
    - 평생학습관의 기능
- 의결결과 : 원안가결